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81호

2021.6.1.(화)



목 차

◆ **자치법규**

[규 칙]

제442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

자치법규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420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2021년 6월 1일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입장료 등의 환불)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 납부된 입장료 및 이용료를 환불함에 있어 기상재해(황사·호우·태풍주의보 등)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- 1. 개정이유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 제1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의 환불기준을 정비함.
- 2. 주요내용
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의 환불기준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환불기준인 별표 4를 삭제하고, 그 밖에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(제10조 및 별표 4)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									
	람								